

국가대표 및 국가상비군 선수 선발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수한 골프선수 발굴과 육성을 위한 선발의 기준과 절차를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국가대표는 국가대표선수 및 국가대표지도자를 말한다.

② 국가대표선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4의2호에 따른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골프협회(이하 “협회” 또는 "KGA"라 한다)가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는 제외한다)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확정한 사람을 말한다.

③ 국가상비군은 주니어국가상비군을 포함한 국가상비군선수 및 국가상비군지도자를 말한다.

④ 제2항의 국가대표선수에는 “협회 국가대표 강화훈련”에 참가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⑤ 국가대표지도자 및 국가상비군지도자는 국가대표 및 국가상비군 훈련기간, 각종 국제경기대회에 선수를 지도·관리하기 위해 협회에서 선임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협회 국가대표 및 국가상비군(주니어국가상비군) 선발과 관련하여 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규정되지 않는 한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제4조(선발자격)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본 규정에서 정한 기준으로 선발 자격을 부여한다.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국가대표 및 국가상비군이 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 심의 중인 자
4. 선수 또는 지도자가 폭력행위로 3년 미만의 자격정지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부터 자격정지 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단, 3년 이상의 자격정지를 받은 자는 영구결격
5. 성추행, 성희롱 등 성(性)과 관련된 범죄행위를 한 선수 또는 지도자가 자격정

지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부터 자격정지 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단, 5년 이상의 자격정지를 받은 자는 영구 결격

6. 승부조작, 불공정 행위(부정선발, 담합, 금품수수, 훈련비 횡령)와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행위로 징계를 받은 자는 영구결격

7. 기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

제6조(선발구분) 국가대표, 국가상비군 그리고 주니어국가상비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1. 국가대표 및 국가상비군 (초등부 제외)
2. 주니어국가상비군 (5~6학년 초등부)

제7조(특별선발) 주요 국제대회에 파견 선수선발은 위원회 의결에 따라 회장의 승인으로 특별 선발할 수 있다.

제8조(선발시기) 선수 선발은 당해연도 10월~11월 중에 제11조(선발방법)에 의거 선발한다.

제9조(선발인원) 선발 인원은 다음의 정수로 한다.

구 분	국가대표	국가상비군			주니어국가상비군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남 자	6명	5명	8명	6명	3명
여 자	6명	5명	8명	3명	3명
계	12명	10명	16명	9명	6명

제10조(선발대회와 배점) ① 선발대회는 협회 및 연맹(초등,중고,대학)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협회 승인대회를 기준으로 하며, 대회 선정과 폐지, 배점의 결정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선발대회 및 배점은 아래와 같으며, 순위별 배점은 별표 제1호에 따른다.

배 점	선 발 대 회	
	국내대회	국제대회
25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오픈 · 한국여자오픈 · 매경오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안게임 개인전 · 세계아마추어골프팀선수권 개인전
20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아마추어선수권 · 한국여자아마추어선수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태평양골프팀선수권 개인전 · 아시아태평양아마추어챔피언십(AAC, WAAP)
15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체육대회 개인전 · 전국소년체육대회 개인순위 · 한국주니어 · 호심배 · 송암배 · 매경솔라고배 · KB금융그룹배 · 베어크리크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퀸시리키트컵 개인전 · 세계대학선수권(유니버시아드) 개인전
10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 박카스배 개인전 · 드림파크배 · 한국초등학교골프연맹회장배 · 한국중.고등학교골프연맹회장배 · 한국대학골프연맹회장배 	
5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건스매치플레이 · 초.중.고, 대학 연맹 주최.주관 승인 대회 (단, 당해연도 사업승인 대회에 한함) · 시도골프협회장배 (주1: 시도협회에서 KGA에 사전 승인을 받은 점수부여방법에 따라 점수 부여 가능 (주2: 대학부, 일반부 제외) 	

③ 상기 제2항의 선발대회 중 연맹 및 시도골프협회 주관 대회가 당 협회(대한골프협회) 주관 대회 일자(본경기)와 중복되는 경우 선발대회로 인정하지 않는다. 단, 협회 주관 대회 일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변경되어 연맹 대회와 중복되거나, 부별(남자부, 여자부) 일정이 틀릴 경우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해당 연맹 대회를 선발대회로 인정할 수 있다.

④ 별표 제1호의 순위별 점수 분배 시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 해당 순위의 점수를 합산하여 인원수만큼 나눈 뒤(소수점 반올림) 동순위자에게 각각 부여한다. 단, 최저순위에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 인원수에 상관없이 최저점수를 해당 선수 전원에게 부여한다.

⑤ 오픈경기는 프로와 아마추어의 성적을 합산한 종합순위를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단, 종합순위 21위 이하의 아마추어 선수 전원에게는 10점을 부여하며, 아마추어

부 1위, 2위, 3위에게는 30점, 20점, 10점 순으로 가산점을 부여한다. 아마추어부 순위가 동순위에 해당될 경우 동순위 해당 선수 모두에게 가산점을 부여한다.

제11조(선발방법) ① 국가대표는 제3항에 따라 우선선발한 후 제4항의 선발전을 통해 선발한다.

② 국가상비군은 아래 제5항에 따라 선발하며, 주니어국가상비군은 제10조제2항에 나열된 대회에서 획득한 합산 점수로 선발한다.

③ 국가대표 우선선발

1. 선발 인원은 3명이며, 우선선발 방법은 별표 제2호에 규정된 조건을 최소 3개 이상 충족 시 우선선발 대상에 해당된다.
2. 우선선발 인원이 3명을 초과할 경우 조건(1번~9번) 중 다수 조건을 충족시킨 선수를 우선선발한다. 충족 조건의 수가 동일할 경우 2번~8번 조건 중 세부항목을 다수 달성한 선수를 우선 선발하며, 그래도 충족 조건의 수가 동일할 경우 위원회 결의를 통해 추가 선발할 수 있다. 또한, 우선선발 대상자가 프로전향예정자라 할지라도 우선 선발된 것으로 인정하여 우선선발 인원에 포함한다.
3. 우선선발 대상자가 없을 경우 또는 우선선발 대상자가 3명 미만일 경우 선발전 참가 지정대회 합산점수 순으로 최대 3명까지 우선 선발한다. 합산점수가 동점일 경우 대회 참가수가 적은 선수가 우선하며, 대회 참가수가 동일할 경우 동점자 모두 참가한 선발전 참가 지정대회 중 최근 대회 성적을 비교하여 결정한다. (성적 비교는 비교 대상 대회에서 정한 카운트백 방식 적용)

④ 국가대표 선발전 :

1. 아래 대상자에게 선발전 참가자격을 부여한다.

자 격	남 자	여 자
당해연도 국가대표	약간 명	약간 명
선발전 지정대회 합산점수 상위자	6명	6명
월드랭킹 50위 이내	약간 명	약간 명

주1) 선발전 지정대회 합산점수 상위자 중 우선선발 및 프로전향 선수가 있을 경우에는 차순위자에게 선발전 참가 자격이 부여된다. 차순위자가 동점일 경우에는 동점자 모두에게 선발전 참가자격을 부여한다.

주2) 당해연도 국가대표가 선발전 지정대회 합산점수 상위자 또는 월드랭킹 50위이내의

카테고리에 포함된 경우, 그 선수는 다수의 선발전 참가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여, 그 선수를 제외한 차순위자에게 선발전 참가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주3) 월드랭킹 반영 기준일은 선발전 개최 4주전으로 정한다.

2. 선발전 지정대회는 아래와 같다.

구 분	대 회 명
남 자	한국오픈, 매경오픈, 한국아마, 드림파크배, 매경솔라고배, 베어크리크배, 송암배, 호심배, 전국체전-개인전
여 자	한국여자오픈, 한국여자아마, 드림파크배, 매경솔라고배, 베어크리크배, 송암배, 호심배, KB배, 전국체전-개인전

주) 선발전 참가자는 참가신청서 접수 시 필히 소속 시도협회장의 확인(직인 날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협회장 확인(직인)이 누락된 경우 선발전에 참가할 수 없다.

3. 선발전 일정이 확정될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선발전 조건을 발표하여야 한다.

⑤ 국가상비군 선발

1. 국가상비군은 제10조제2항의 대회에서 획득한 점수를 대회 참가수로 나눈 평균점수 순으로 제9조에서 정한 부별 인원을 선발한다. 제9조에서 정한 인원수에 국가대표 선발전 참가자격을 갖춘 선수들이 포함되더라도 그 인원수를 제외하여 선발하지 않는다. 단, 프로전향예정자가 제9조에서 정한 정원(순위)에 포함될 경우 프로전향예정자는 제외하여 차순위자에게 선발 자격을 부여한다.

2. 평균점수는 최소 대회 참가수를 10개로 정하여 아래와 같이 구한다.

주1) 개인별 대회 참가수가 10개 이상일 경우, 대회에서 획득한 종합점수를 개인별 대회 참가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주2) 개인별 대회 참가수가 10개 미만일 경우, 대회에서 획득한 종합점수를 최소 대회 참가수인 10개로 나누어 산정한다.

주3) 대회 참가 기준은 최소 2라운드 이상의 대회에 참가한 경우에 한한다. 단, 라운드 중 실격 및 기권의 경우는 대회 참가에 해당하며, 본 대회 참가를 위한 별도의 예선전은 대회참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시도협회장배(시도협회 배점 부여방법)에서 배점을 부여받은 선수는 1개 대회에 참가한 것으로 간주한다.

주4) 평균점수가 동점일 경우 대회 참가수가 많은 선수가 우선한다. 대회 참가수가 동일할 경우 동점자 모두 참가한 최근 대회 성적을 비교하여 결정한다(성적 비교는 비교 대상 대회에서 정한 카운트백 방식).

⑥ 제3항~제5항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결과가 발표된 후 2일 이내에 승낙 또는 포기 의사를 협회로 통보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발표된 최종선발 명단에서 추후 결원이 생기더라도, 그 결원에 대한 인원을 충원하지 않는다.

제12조(임명과 활동기간) 회장 승인으로 최종 임명된 선수의 활동기간은 당해연도 11월 1일부터 차기년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선수의 활동기간 중 결원 또는 증원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결의에 따르며, 보결 선수의 활동기간은 전임 선수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선수의 의무) 국가대표, 국가상비군 그리고 주니어국가상비군에 선발된 선수는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은 물론 협회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1. 품행을 단정히 하고, 룰과 에티켓을 지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2. 기량향상과 학업에 최선을 다하며, 존경받는 골프선수가 되도록 노력한다.
3. 아마추어자격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활동 기간 중 프로로 전향할 수 없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격을 포기하여야 할 경우 포기각서를 제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선수는 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응하여야 한다.
4. 모든 선수는 협회에서 주관하는 합숙훈련 및 소집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불참 시 서면으로 사유서를 제출하여 감독 또는 코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협회에서 지원받은 선수단 물품은 선수로 활동하는 동안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안 된다.
6. 지도자(코치)의 기술 지도를 포함한 정당한 지시사항을 성실히 따라야 한다.
7. 협회가 주관하는 대회 이외의 국내·외 대회에 출전을 원할 경우 사전에 감독 또는 코치의 참가승인을 받아야 하며, 협회의 최종 결정사항에 따라야 한다. (단, 산하연맹과 시도대회 출전은 예외)

제14조 (포상 및 징계) ① 국가대표, 국가상비군 그리고 주니어국가상비군으로 선발되어

활동하는 기간 포상 및 징계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의한다.

② 포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수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을 거쳐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 국가대표, 국가상비군 그리고 주니어국가상비군으로서 활동함에 있어 국위 선양에 현격한 공헌을 한 선수
2. 주요 국내대회 및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
3. 협회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 국가대표(상비군)팀의 인화단결에 모범이 된 선수
4. 기타 포상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회 추천을 받은 선수

③ 징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수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을 거쳐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 국가대표, 국가상비군 그리고 주니어국가상비군으로서 활동함에 있어 제13조 선수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선수
2. 국가대표(상비군)으로 활동하면서 명예를 훼손하거나, 국가대표(상비군)팀의 인화단결을 저해한 선수
3. 협회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위반하거나, 기타 각종 규정을 지키지 않은 선수

제15조(선발기록자료 보존과 폐기) ① 선발기록자료는 당 사무처에 5년간 보존하며, 보존기간 기산일은 처리.완료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로 한다.

② 회장은 다음의 각호에 따라 기록 보존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1. 정책 또는 사업 내용이 변경.조정되어 보존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각종 감사, 수사 또는 소송과 관련되어 그 종료 시까지 기록의 보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보존기간이 경과한 경우 회장의 승인을 거쳐 폐기하여야 하며,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는 문서세단기 등으로 절단하거나 원형의 내용을 알 수 없도록 완전 소각시킨다.

부 칙 (1996. 4. 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7.18)

제1조(경과조치) 이 개정규정은 제143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나 개정 전이라 할지라도 이 개정규정을 우선 준용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11. 9.19.)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제143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5.22.)

제1조(경과조치) 이 개정규정은 제147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나 개정 전이라 할지라도 이 개정규정을 우선 준용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13. 8.20.)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제147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9.13.)

제1조(경과조치) 이 개정규정은 제148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나 개정 전이라 할지라도 이 개정규정을 우선 준용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13.11.26.)

제1조(경과조치) 이 개정규정은 제148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나 개정 전이라 할지라도 이 개정규정을 우선 준용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15. 3.20.)

제1조(경과조치) 이 개정규정은 제151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나 개정 전이라 할지라도 이 개정규정을 우선 준용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16. 4. 1.)

제1조(경과조치) 이 개정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나 개정 전이라 할지라도 이 개정규정을 우선 준용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17. 3.23.)

제1조(경과조치) 이 개정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나 개정 전이라 할지라도 이 개정규정을 우선 준용하여 적용한다(2018년 국가대표 및 국가상비군 선발 부터 적용).

부 칙 (2018. 3.15.)

제1조(경과조치) 이 개정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나 개정 전이라 할 지라도 이 개정규정을 우선 준용하여 적용한다(2019년 국가대표 및 국가상비군 선발 부터 적용).

부 칙 (2019. 4. 1.)

제1조(경과조치) 이 개정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나 개정 전이라 할 지라도 이 개정규정을 우선 준용하여 적용한다(2020년 국가대표 및 국가상비군 선발 부터 적용).

[별표 제1호]

순위에 따른 배점표

250점 대회		200점 대회		150점 대회		100점 대회		50점 대회	
순위	배점	순위	배점	순위	배점	순위	배점	순위	배점
1	250	1	200	1	150	1	100	1	50
2	200	2	160	2	120	2	80	2	40
3	160	3	130	3	98	3	65	3	33
4	130	4	110	4	83	4	55	4	28
5	110	5	90	5	68	5	45	5	23
6	100	6	80	6	60	6	40	6	20
7	90	7	70	7	53	7	35	7	18
8	80	8	60	8	45	8	30	8	15
9	70	9	50	9	38	9	25	9	13
10	60	10	45	10	34	10	23	10	11
11	50	11	40	11	30	11	20		
12	45	12	36	12	27	12	18		
13	43	13	34	13	26	13	17		
14	40	14	32	14	24	14	16		
15	38	15	30	15	23	15	15		
16	35	16	28	16	21	16	14		
17	33	17	26	17	20	17	13		
18	30	18	24	18	18	18	12		
19	28	19	22	19	17	19	11		
20	25	20	20	20	15	20	10		

[별표 제2호]

국가대표 우선선발 조건표

조건	남 자	여 자
1	○ R&A 월드아마추어골프랭킹 100위 이내	○ R&A 월드아마추어골프랭킹 50위 이내
2	○ KGA 주관 프로대회 5위 이내 (한국오픈, 매경오픈)	○ KGA 주관 프로대회 5위 이내 (한국여자오픈)
3	○ KGA 주최·주관 지정대회 우승 (허정구배, 호심배, 송암배, 매경아마, 드림파크배, 베어크리크배, 전국체전-개인전)	○ KGA 주최·주관 지정대회 우승 (강민구배, 호심배, 송암배, 매경아마, 드림파크배, 베어크리크배, 전국체전-개인전, KB배)
4	○ KPGA 주관 프로대회 3위 이내	○ KLPGA 주관 프로대회 3위 이내
5	○ 세계아마추어골프팀선수권 개인전 7위 이내 (2년 주기) ○ 아시안게임 개인전 3위 이내	○ 세계여자아마추어골프팀선수권 개인전 3위 이내 ○ 아시안게임 개인전 3위 이내
6	○ 아시아태평양선수권대회 개인전 우승 및 준우승 (노무라컵, AAC)	○ 아시아태평양선수권대회 개인전 우승 및 준우승 (퀸시리키트컵, WAAP)
7	○ 해외 내셔널타이틀아마추어선수권 개인전 (대만/일본/호주-우승, 미국/영국-준우승) ○ KGA공식파견 국제대회 우승 (네이버스, Duke of York, The Jr Open)	○ 해외 내셔널타이틀아마추어선수권 개인전 (대만/일본/호주-우승, 미국/영국-준우승) ○ KGA공식파견 국제대회 우승 (네이버스, Duke of York, The Jr Open, 월드주니어걸스)
8	○ 해외 프로투어 개인전 -PGA 및 유럽: 본선 진출 -일본 및 호주: 15위 이내	○ KGA 해외파견 프로대회 -LPGA: 15위 이내 -일본 및 유럽, 호주: 10위 이내
9	○ 선발전 참가 지정대회 배점 2위 이내	○ 선발전 참가 지정대회 배점 2위 이내